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0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6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조사내용	비고
위치와 면적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와 면적	지적도 및 지형도
건축물	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	건축물대장
용도별 분포	용도지역·지구·구역별 면적	토지이용계획자료
토지 소유현황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현황	지목별 평균지가	지가자료
토지의 이용현황	지목별 면적과 분포	토지대장

제8조제4항 후단 중 “상속인임임”을 “상속인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4조 제목의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한다.

제15조 제목의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본문 중 “입회시켜야”를 “참관시켜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을 “참관을 거부하거나 참관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지적재조사측량수행자의 기술자격과”를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으로, “검사자”를 “검사자 직급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으로, 괄호 안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제7조제4항”을 “같은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예시 1서식, 예시 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시·군·구 공고 제 - 호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사 업 명:

2. 사업위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5. 사업기간:

6. 사업예산: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나. 열람장소: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나. 전 화:

다. 팩 스:

라. 우 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요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작성 예시

토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000-00번지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토지대장	대	1,000	○○○	○○시 ○○로 22	
	등기부	대	1,000	○○○	○○시 ○○로 22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 분	유/무	비고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무	
	기 타	무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 ○○로 22						비고
	구 분	용 도	층 수 (지상/지하)	건축 면적 (㎡)	건폐율	소유자		
					용적률	성명	주소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1/	119.9	8.2%	○○○	○○시 ○○로 22	
			/		%			
			/		%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64. 계획관리 지역 / 31.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 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도시계획시설	없음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지형	도로 조건	형상
	주거용	평지	소로각지	불규칙형
	기준일(2021. 1. 1.)		공시지가(㎡당)	10,000원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일	2021. 00. 00.	사전조사일	2021. 00. 00.	확인일	2021. 00. 00.
		사전조사자	○○○	확인자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지(임야)대장 연혁 기재 예시

1.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연혁을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2.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연혁을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3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연혁을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연혁을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5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5.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의 경우 종전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로 폐쇄” 연혁을 기재하고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56)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6.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완료”로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7.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8.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가 해소된 경우에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 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08) 대	*80*	(58)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조사항목</th><th>조사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와 면적</td><td><u>사업지구</u>의 위치와 면적</td><td>지적도 및 지형도</td></tr>
<tr><td>건축물</td><td>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td><td>건축물대장</td></tr>
<tr><td>용도별 분포</td><td>용도지역·지구·구역별 면적</td><td>토지이용계획자료</td></tr>
<tr><td>토지 소유현황</td><td>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td><td>토지(임야)대장</td></tr>
<tr><td>개별공시지가현황</td><td>지목별 평균지가</td><td>지가자료</td></tr>
<tr><td>토지의
이용현황</td><td>지목별 면적과 분포</td><td>토지대장</td></tr>
</table>
③·④ (생 략)

제8조(동의서 산정 등) ① ~ ③ (생 략)

④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미약,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u>상속인임임</u>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td><td>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table>
<tr><th>조사항목</th><th>조사내용</th><th>비고</th></tr>
<tr><td>위치와 면적</td><td><u>지적재조사지구</u>의 위치와 면적</td><td>지적도 및 지형도</td></tr>
<tr><td>건축물</td><td>유형별 건축물(단독, 공동 등)</td><td>건축물대장</td></tr>
<tr><td>용도별 분포</td><td>용도지역·지구·구역별 면적</td><td>토지이용계획자료</td></tr>
<tr><td>토지 소유현황</td><td>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구분</td><td>토지(임야)대장</td></tr>
<tr><td>개별공시지가현황</td><td>지목별 평균지가</td><td>지가자료</td></tr>
<tr><td>토지의 이용현황</td><td>지목별 면적과 분포</td><td>토지대장</td></tr>
</table>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의서 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상속인임</u>-----

--.</td></tr>
</table>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 ---------- ---------- ---------- **지적재조사지구**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열람시켜야하며,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 ---------- ---------- ---------- ---------- - **지적재조사지구**---------- ----------.
제14조(토지현황 현지조사 **입회**) 지적소관청은 토지현황 현지조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토지현황 현지조사 **참관**) -- ---------- ---------- ---------- **참관하게** --------.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입회**)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토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참관**) --- ---------- ---------- ---------- ---- **참관시켜야** -----. ------

지소유자 등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관을 거부하거나 참관을** ----------.
제22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시 3과 같이 작성한다.	제22조(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작성자는 **지적재조사측량수행자의 기술자격과**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자** 성명을 기재한다.	5. ------ **측량자의 소속, 직급(직위) 및** ----------**검사자 직급 및**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와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미작성 조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 ----------.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12월 31일**----------.

현 행	개 정 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시·군·구 공고 제 - 호	시·군·구 공고 제 - 호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사 업 명:	1. 사 업 명:
2. 사업위치:	2. 사업위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사업시행자:	4. 사업시행자:
5. 사업기간:	5. 사업기간:
6. 사업예산:	6. 사업예산: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나. 열람장소: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나. 열람장소: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나. 전 화: 다. 팩 스: 라. 우 편: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나. 전 화: 다. 팩 스: 라. 우 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0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통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0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사업명			
②사업위치			
③사업시행자			
④의견제출자	성 명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⑤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의견서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결과통약	→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 1]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작성 예시

토지 소재지	○○북도 ○○시 ○○읍 ○○리 115-50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토지대장	대	1466	박○○	○○시 시청로 17번길 5, 601호(○○동, 한솔빌)	
	등기부	대	1466	박○○	○○시 시청로 17번길 5, 601호(○○동, 한솔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 분	유/무	비고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무	
	기 타	무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영주시 종령로 1182번길 11-10						비고
	구 분	용 도	층 수 (지상/지하)	건축 면적 (㎡)	건폐율	소유자		
					용적률	성명	주소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1/	119.9	8.2%	방굴규	종령로 1182번길 11-10	
			/		%			
			/		%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64. 계획관리 지역 / 31.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지역 지구 등	가축사육제한 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도시계획시설	없음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지형	도로 조건	형상
	주거용	평지	소로각지	불규칙형
	기준일(2019. 1. 1.)		공시지가(㎡당)	10,000원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일	2016. 9. 2.	사전조사일	2016. 9. 10.	확인일	2016. 10. 1.
		사전조사자	홍길동	확인자	김갑동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 정 안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 1]

토지현황조사서(사전조사서) 작성 예시

토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000-00번지					
토지에 관한 사항	구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토지대장	대	1466	○○○	○○시 ○○로 22	
	등기부	대	1466	○○○	○○시 ○○로 22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 분	유/무	비고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무	
	기 타	무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	○○시 ○○로 22						비고
	구 분	용 도	층 수 (지상/지하)	건축 면적 (㎡)	건폐율	소유자		
					용적률	성명	주소	
	일반건축물	단독주택	1/	119.9	8.2%	○○○	○○시 ○○로 22	
			/		%			
			/		%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64. 계획관리 지역 / 31. 자연취락지구
	다른 법령 등에 따른지역 지구 등	가축사육제한 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도시계획시설	없음

토지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이용현황	지형	도로 조건	형상
	주거용	평지	소로각지	불규칙형
	기준일(2019. 1. 1.)		공시지가(㎡당)	10,000원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일	2016. 9. 2.	사전조사일	2016. 9. 10.	확인일	2016. 10. 1.
		사전조사자	○○○	확인자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1.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3일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1113	
			(03)소유권이전	홍길동	740630-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2.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3일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1113	
			(03)소유권이전	홍길동	740630-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08) 대	*100*	(3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3일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1113	
			(03)소유권이전	홍길동	740630-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개 정 안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예시4]

토지(임야)대장 연혁 기재 예시

1.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2.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3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3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폐지			

3.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현 행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3일	완창시동완구 비산동 1113	
			(03)소유권이전	홍길동	740630-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08) 대	*100*	(5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5.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의 경우 종전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로 폐쇄" 연혁을 기재하고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3일	완창시동완구 비산동 1113	
			(03)소유권이전	홍길동	740630-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08) 대	*100*	(56)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6.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완료"로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개 정 안

4.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폐지의 경우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연혁을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54)2011년6월30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폐지			

5.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의 경우 종전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로 폐쇄" 연혁을 기재하고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100*	(21)2006년1월12일 1-1번으로부터 분할	2001년7월1일	○○시 ○○구 ○○로 11	
			(03)소유권이전	○○○	111111-1111111
(08) 대	*100*	(53)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100*	(56)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6.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작성된 새로운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완료"로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현 행

7.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 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8.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가 해소된 경우에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 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9월11일	화성시 봉담읍 11-1	
			(03)소유권이전	한지영	800214-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08) 대	*80*	(58)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개 정 안

7.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8.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가 해소된 경우에는 토지이동 사유에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라고 기재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주소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08) 대	*80*	(55)2011년12월22일 지적재조사 완료	2008년7월1일	○○시 ○○면 ○○길 22	
			(03)소유권이전	○○○	222222-2222222
(08) 대	*80*	(57)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			
(08) 대	*80*	(58)2011년3월17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